

푸른도시여가국 '24년 1분기 예비비 사용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 (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) 제3항에 따라,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예비비 사용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4조(예비비), 지방재정법 제43조(예비비)
- 서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(예비비의 사용)

□ 1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: 1건 300,000천원 ('24. 1. 16.)

- 예비비 사용 사유 : **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공탁금액 지출**
 - 토지 소유주(원고)가 서울시(피고)에서 무허가 건축물 철거 후 무단으로 등산로를 설치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제기('22.9.30.)
 - 1심 판결 선고(원고 승소, '23.11.14.) 후 원고가 판결금액 수령을 위해 우리 시 재산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여, 서울시 시금고 지출업무 등 회계처리에 차질이 우려되어 긴급하게 예비비를 배정받아 공탁비용으로 집행
 - 법원의 1심 판결 결과는 '24년 예산 편성 시 예측이 어려웠으며, 향후 항소심 수행을 통해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할 예정임
- 지급내역 : 300,000천원

사업명	지급일	지급액	산출내역
근교산 등산로 정비 (배상금)	'24. 1. 16.	300,000천원	법원 담보공탁(300백만원)